

전화교환원 정년 53살로 차등적용 대법 “여성차별 아니다”

“노사합의 거쳤고 잉여인력 발생” 원심깨고 판결

여성이 대부분인 전화교환원의 정년을 다른 직원보다 5년이 낮은 53살로 제한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남녀 차별대우 금지조항이나 남녀 고용평등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7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교환원 김영희(57·여)씨의 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교환원은 자동화로 인해 다른 직렬보

다 많은 잉여인력이 발생해 82년부터 신규인력을 뽑지 않았다”면서 “교환원이 고령화됨에 따라 교환원의 87.1%가 젊은 교환원의 채용을 원하면서 현재의 정년이 적정하거나 오히려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환직렬에서 신규인력의 유입이 어려워져 연공서열제를 택하고 있는 원고회사의 고용비용이 증대하고 있는데다 교환직렬의 차등정년을 실시하면서 노사간의 협의를 거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점을 종합할 때 차등정년제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리성 없는 남녀차별로 보고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및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교환원이던 김씨는 지난 92년 12월 정년 53살 규정에 걸려 정년퇴직하게 되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고법은 “여성이 대부분인 교환원의 정년을 다른 일반직원보다 5년 낮게 규정한 것은 남녀차별 대우를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난다”면서 김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법 기자